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재판관할의 조정〉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41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범죄를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고, 변사자가 군인이거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규정을 모든 사망사건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민간에 이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상 사망사건의 일차적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고 있음. 군인 등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의 관할로 둔 것은 의문사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일차적 수사권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명시하고 변사자의 검시 또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군 의문사 사건을 민간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8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면서,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¹⁾에 규정된 사람(이하 “군인등”이라 함)이 범한 성폭력범죄, ② 군인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및 ③ 군인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현행법 제264조³⁾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군인 등)⁴⁾의 변사사건이나 병영 등에서 발견된 변사사건에 대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2)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3)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하여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하고 있고,⁵⁾ 제228조의3⁶⁾7)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하 “군 수사기관”이라 함)이 수사 과정에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일반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군사법원법」을 개정⁸⁾하면서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행사하도록 한 것임.

4)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형법상 특정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중 일부를 포함) 및 ②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임. 이에 따라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군인등”보다 그 범위가 넓음.

5) 한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변사사건 발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검시 또는 검증 시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해당 조항은 2021. 9. 24. 일부개정된 법률 제18465호에 제228조제3항에 신설된 규정으로, 2025. 1. 31. 일부개정된 법률 제20736호에서 현행의 위치로 이동한 것임.

7)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8) 2022. 7. 1. 시행.

□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범위를 군인등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로 확대하고, 군인등의 사망사건 자체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변사자의 검시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생략)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u>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u>	2. ----- ----- <u>사람의 사망과 관련한</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28조의4(사망사건의 수사권)</u> <u>「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u>

현행	개정안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사망 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진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이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군인등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이 우선 검시 등을 실시하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게 되는 실무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망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주체가 되게 하고 변사자의 검시도 일반 형사절차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군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사망원인범죄를 일반 사법체계로 이관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연장선에서 사망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수사·검시체계의 전환 여부는 군인등의 사망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사망사건 발생 초기의 대응 및 관련 사실·증거 확보의 신속성·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2. 구체적 검토

(1) 사망과 “관련한” 범죄로의 재판권 확대 관련 (안 제2조제2항제2호)

□ 안 제2조제2항제2호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범위를 현행 “군인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서 “군인등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로 확대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등의 사망과 해당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는 사망과 범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사망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사망 이전의 범죄나 사망 이후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범죄까지 “사망과 관련된 범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망사건의 수사권 관련 (안 제228조의4)

□ 안 제228조의4는 군인등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 검사의 일반적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⁹⁾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라

9)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제195조제1항 후단은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종전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안 제228조의4가 군인등의 사망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수사체계와 달리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최근 수사·공소 기능을 분리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방향과 군인등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별도의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⁰⁾

- 또한, 현행 제2조제2항 단서¹¹⁾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군인등의 사망원인범죄 등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짐. 이에 따라 제228조의3¹²⁾에 따른 일반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시 등에는 해당 범죄를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현행법의 체계로 보임.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하던 제196조를 삭제하였음.

- 10) 만약 개정안의 수사 주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망사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 제2조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11)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그런데 안 제228조의4 단서는 전시 등의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문언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도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일반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중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변사자 검시규정의 정비 방식 관련 (안 제264조)

- 안 제264조는 변사자의 검시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22조¹³⁾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임.
-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 군검사 중심의 검시절차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일반 검시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같은 조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적용한다” 등으로 자구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경과조치 관련 (안 부칙 제2조)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망사건을 제22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첩하도록 하면서,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경과조치는 군사법경찰관이 이첩 전에 행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행 제264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진행 중인 변사사건이 이첩 대상인 “수사 중인 사망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경과조치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기관 등의 의견

○ 국방부는 군 사망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군부대 출입 제한 등에 따른 군 변사사건 처리의 특수성, 현행법 하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해석상 논란이 지속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단시간 내 이루어지는 초동조치가 실체적 진실규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군사경찰·군검사·군의

료기관 등 업무 협조체계에 따른 효율성, 군 수사기관의 변사기록이 전공사상처리·순직유형 분류·보훈심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유지에 실무상 장점이 크다는 입장임.

- 경찰청¹⁴⁾도 군부대의 특수성·변사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실무상 민간 경찰도 현장 감식을 실시하여 군 수사기관의 감식결과에 대해 중첩적으로 객관성을 확인하고 있고, 유가족 참여 하에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어 군 수사기관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28조의4에서 군 인등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게도 부여하는 부분은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5

14) 국방부 제출자료에 첨부된 경찰청 의견임.